

보도해명자료

보도일자

2017.7.11(화) 배포 즉시

한국경제 “선수가 룰 만들고 심판까지 보나”... 스튜어드십 코드 ‘절대 권력’ 기업지배구조원” 제하의 기사(2017.7.10) 관련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한국경제 7월10일자 “선수가 룰 만들고 심판까지 보나”... 스튜어드십 코드 ‘절대 권력’ 기업지배구조원” 제하의 기사가 사실이 아님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선수가 룰 만들고 심판까지 보나” ... 스튜어드십 코드 ‘절대 권력’ 기업지배구조원”(17.7.10) 제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 ① “전문가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을 만든 기업지배구조원이 기업 평가와 의결권 자문 등을 동시에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
- ② “기업지배구조원은 국내 3대 연금인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에 의결권 자문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민간 기업이다”
- ③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기업지배구조원은 이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잘 지키는지 등을 점검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 ④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기업지배구조원에 의결권 자문을 맡긴 기관투자가에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점수를 잘 줄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며 “선수(의결권 자문)가 ‘룰(스튜어드십 코드 제·개정, 이행·점검)’을 만들고, 심판(기업 평가)으로까지 뛰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 ⑤ “국내에서 의결권과 지배구조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많지 않다 보니 의결권 자문과 기업 평가 등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원에 업무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 ⑥ “ESG ... 한국거래소 산하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매년 시행한다”

2.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I)의 입장

□ 상기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SC)를 제정한 기관은 CGS가 아니라 CGS가 참여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로 학계, 업계, 유관 협회, 연구기관 등의 각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 ② CGS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기업이 아니라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사원기관(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이 매년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운영되며, 공익 목적 사업을 수행합니다. 해당 수익사업으로 연금 등에 의결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연간 예산의 일부(6.8%, 2016년 기준)에 불과합니다.
 - ③ CGS는 SC 참여 기관투자자 등의 **코드 이행 여부, 공개 사항의 사실 여부를 개별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며**, 이를 뒷받침 할 법적 권한도 없습니다. 코드의 ‘권고’에 따라 CGS가 조사하는 사항은 참여 기관투자자 수와 같은 전반적인 시장 동향입니다.
- ※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권고’: “3.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는 한국기업 지배구조원의 업무로 시장 동향 조사·점검 업무가 명시되어 있다. 이 업무 외에 참여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개별적 이행 점검 업무의 필요성, 담당 기관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해서는 추후 논의할 것을 권고한다.”
- ④ CGS는 기관투자자의 SC 이행 여부에 대한 개별 점검을 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행·점검 점수 부여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SC 제·개정(개정은 제정위 후속인 “SC 발전위원회” 소관), 개별 이행 점검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기사에서 언급한 ‘**틀을 만드는**’ 것과도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 ⑤ CGS는 **비영리사단법인(지정기부금단체)**으로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라는 설립 취지와 사업목적에 따라 **기업 평가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며, 의결권 자문서비스도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공익적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합니다.

⑥ 한국거래소는 CGS의 사원기관 중 하나이며, CGS는 한국거래소의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 상기 입장을 종합하면 CGS는

- (1) 스투어드십 코드를 정하거나 이행 점검하지 않고,
- (2) ESG 평가는 무료로 시행하며,
- (3) 의결권 자문 사업은 공익적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수행하므로,

SC 관련 업무와 ESG 평가, 의결권 자문 사업 간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는 다음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 “일각에선 스투어드십 코드 원칙을 정하고 이를 이행·점검하는 기업지배구조원이 ESG 평가와 기관투자가 대상 의결권 자문 사업까지 함께하는 건 이해관계 상충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한국경제 기사 중)

※ 담당: 정책연구본부 송민경 연구위원 (02-3775-3724, mksong@cgs.or.kr)